태국(Thailand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○ 최초법 및 현행법 : 1990년(사회보장), 1991년 시행; 2003년(노령); 및 2011년(국민저축 기금)

2 제도형태

○ 사회보험제도, 적립기금 및 사회부조제도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(정규부문 제도) : 정규부문 제도 근로자
 - 임의적용 : 근로가 정지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12개월 이상 의무가입 이력 보유자
 - 적용제외 :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로자; 특정 농업, 임업, 어업 근로자; 임시 및 계절성 근로자
 - 특별제도 : 판사, 공무원 및 국영기업 근로자
- 사회보험(비정규부문 제도) : 비정규부문 자영자 임의적용
- 적립기금(국민저축기금): 비정규부문 자영자 임의적용
- 사회부조 : 태국 국민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(정규부문 제도) : 총 월 가입소득액(노령급여)의 3%; 임의 가입자의 월정액 보험료 288바트(baht)(노령, 장애 및 유족급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1,650바트(baht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15,000바트(baht)
 - 가입자 보험료는 가족수당의 재원으로도 사용됨. 장애 및 유족급여의 질병 및 출산 기금 출처 참고
 - 사회보험(비정규부문 제도) : 해당 없음
 - 적립기금 : 해당 없음
 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(정규부문 제도) : 월정액 보험료 288바트(baht)(노령, 장애 및 유족연금)
- 자영자 보험료는 가족수당의 재원으로도 사용
- 사회보험(비정규부문 제도) : 월 70바트(baht)(장애, 유족 및 질병급여); 월 100바트(baht) (노령, 장애, 유족 및 질병급여); 또는 300바트(baht)(노령, 장애, 유족 및 질병급여, 가족 수당). 노령급여를 위한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가능

• 적립기금 : 최소 월 50바트(baht)

•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(정규부문 제도) : 의무가입 근로자의 월 임금지급액의 3%(노령급여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1,650바트(baht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15,000바트(baht)
- 사용자 보험료는 가족 수당의 재원으로도 사용됨. 장애 및 유족급여의 질병 및 출산 기금 출처 참고
- 사회보험(비정규부문 제도) : 해당 없음

• 적립기금 : 해당 없음

•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(정규부문 제도) : 의무가입 근로자의 월 임금지급액의 1%; 임의가입자에게는 월 48바트(baht)(노령급여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1,650바트(baht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15,000바트(baht)
- 정부 납입 보험료는 가족수당의 재원으로도 사용됨. 장애 및 유족급여의 질병 및 출산 기금 출처 참고
- 사회보험(비정규부문 제도): 월 30바트(baht)(장애, 유족 및 질병급여); 월 50바트 (baht)(노령, 장애, 유족 및 질병 급여); 월 150바트(baht)(노령, 장애, 유족 및 질병급여, 가족 수당)
- 적립기금 :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짐: 30세 미만인 가입자 보험료의 50%; 30~49세인 경우 80%, 50세 이상인 경우 100%
 - 가입자가 30세 미만일 경우 최대 연간 정부 보험료는 600바트(baht), 30~49세일 경우 960바트(baht), 50세 이상일 경우 1,200바트(baht)
- 사회부조 : 총액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연금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 : 최소 180개월 보험료를 납부한 55세인 자

- 근로가 중지되어야 함. 가입자가 만약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다면, 연금은 근로가 중지될 때까지 연기됨
- 노령보조금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 : 최소 1번, 180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55세인 자
 - 근로가 중지되어야 함
- 노령보조금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 : 정규부문 제도 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60세인 자
- 노령연금(국민저축기금, 적립기금) : 정규부문 제도 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60세인 자
- 노령연금(사회부조) : 어떠한 다른 연금도 지급받고 있지 않은 60세인 자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시작되기 전 15개월의 기간 중 최소 3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 - 사회보장국이 선임한 담당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매년 측정함. 사회보장국의 의료 위원회는 장애연금 수혜자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중단할 수 있음
- 장애연금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정규부문 제도 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. 장애가 시작되기 전 10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 - 사회보장국인 선임한 담당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매년 측정함. 사회보장국의 의료 위원회는 장애연금 수혜자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중단할 수 있음
- 장애급여(국민저축기금, 적립기금) :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, 정규부문 제도 하에 가입되지 않은 60세 이하인 자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가입자가 최소 1달의 납부기간을 사망 전 6개월 기간 중에 가졌다면 지급됨. 사망의 원인이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해 또는 질병이어야 함
- 수급권이 있는 유족은 사망자의 명시된 수혜자여야 함; 명시된 수령인이 없다면, 미망인(홀아비), 자녀 및 부모임
- 유족급여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 : 가입자가 사망 전 12개월의 기간 중 최소 6개월의 납부기간을 가졌을 경우(사고인 경우 사망 전 6개월의 기간 중 1달의 납부기간)
- 수급권이 있는 유족은 사망자의 명시된 수혜자, 미망인(홀아비), 자녀 및 부모 포함
- 유족급여(국민저축기금, 적립기금) : 가입자 사망 시 지급
 - 수급권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, 자녀, 및 부모 포함
- 장제비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가입자가 사망 전 6개월 기간 중 최소 1달의 납부 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됨. 사망의 원인은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해 혹은 질병이어야 함
- 장제비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사망자가 비정규부문 제도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거나 혹은 사망 전 12개월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일 시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가입자의 퇴직 전 지난 60개월 간 월 평균가입소득의 2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1.5%씩 가산
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1,650바트(baht)
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15,000바트(baht)
- 노령보조금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 : 가입자의 총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노령보조금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<가입자의 총 납부금액 + 경과이자>에 해당 하는 일시금 지급(노령급여에 가입되어 있다면)
- 노령연금(국민저축기금, 적립기금) : 퇴직 시 계좌 잔고에 근거하여 연금 지급
- 월 최저연금은 600바트(baht)
- 노령연금(사회부조) : 60~69세인 자에게 600바트(baht); 70~79세인 자에게 700바트 (baht); 80~89세인 자에게 800바트(baht); 90세 이상인 자에게 1,000바트(baht)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중증 장애일 시 장애발생 이전 9개월 중 최고 소득 3개월 동안의 가입자 일 평균임금의 50%를 평생 지급; 경증 장애일 시 최대 180개월 동안 최대 30% 지급
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1,650바트(baht)
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15,000바트(baht)
- 장애 연금 하한선 존재하지 않음
- 급여조정 :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생활비 변화에 따라 급여 조정
- 장애연금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장애발생 전 10개월 중 최소 6개월의 납부기간을 가진 자에게 월 500바트(baht); 장애발생 전 20개월 중 최소 12개월의 납부기간을 가진 자에게 월 650바트(baht); 장애발생 전 40개월 중 최소 24개월의 납부기간을 가진 자에게 월 800바트(baht); 장애발생 전 60개월 중 최소 36개월의 납부기간을 가진 자에게 월 1,000바트(baht) 지급. 연금은 최대 15년까지 지급(가입자가 가장 높은 정도의 보장을 신청했다면 사망 시까지 지급; 자영자의 재원조달 참고)
- 장애급여(국민저축기금, 적립기금) : 계좌 잔고의 전체 혹은 부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이상 10년 미만일 시, 사망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의 50%의 4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. 10년 이상일 시, 사망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의 50%의 12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 - 명시된 수혜자가 없다면,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에게 동등하게 금액이 나눠짐
- 유족급여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: <노령보조금 + 가입자의 추가 납부액 잔금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에게 지급
- 유족급여(국민저축기금, 적립기금) : 사망 시 사망자의 계좌 잔고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

- 장제비(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 :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40,000바트(baht) 지급
- 장제비(비정규부문 제도, 사회보험) :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20,000바트(baht) 지급; 사망자가 가장 광범위한 보험 제도를 신청했다면 40,000바트(baht)가 지급됨, 자영자 의 재원조달 참고

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부(Ministry of Labor)
 -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
 - http://www.mol.go.th
- 사회보장청(Social Security Office)
 - 사회보험제도 관리
 - http://www.sso.go.th
- 내무부(Ministry of the Interior)
 - 사회보장제도 관리
 - http://www.moi.go.th
- 재무부(http://www2.mof.go.th)가 감독하는 국민저축기금(http://nsf.or.th)
 - 국민연금저축기금제도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